

# 순 천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988호 2015. 2. 27(금)

## 공 고

순천시 공고 제2015-291호(순천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	2
○ 순천시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 풍덕·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2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회 람											
-----	--	--	--	--	--	--	--	--	--	--	--

발행 : 순천시

편집 : 홍보전산과 (749-5705, FAX : 749-4625)

# 공

# 고

순천시 공고 제2015 - 291호

## 순천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5년 2월 27일

### 순 천 시 장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안 건 명

- 순천시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풍덕·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제정이유

-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심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8. 8. 29일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 2009. 9. 4. 대통령 훈령인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개정에 따라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되었기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심의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헌장심의위원회 운영 구성(안 제11조)
  -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헌장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조명 개정
  - 위원회의 기능을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으로 개정
- 분과별 심의위원회(제12조) 조항 삭제
- 그 밖에 법제처 ‘알리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정의는” → “뜻은”
  - “이란 함은”, “라 함은” → “이란”, “란”
  - “의 규정에 따른” → “에 따른”
  - “의거” → “따라”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대통령 훈령(행정서비스헌장규정),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5. 1. 2. ~ 1. 22.)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10. 27.(여성가족과-39992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2. 16.(전략기획과-1436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4. 12. 31.(순천시 공고 제2014-1453호)

##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객”이라 함은”을 ““고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서비스”라 함은”을 ““서비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고객만족도”라 함은”을 ““고객만족도”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6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헌장심의위원회 운영)** ①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5. 그 밖에 헌장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서비스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공표된 문서를 말한다.</li> <li>2. "고객"이라 함은 시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li> <li>3. "서비스"라 함은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li> <li>4. "고객만족도"라 함은 시정의 주요시책과 수행공무원의 자질 및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li> </ol> <p>제5조(현장의 제·개정 절차) ① 현장 운영 부서장은 현장 제·개정안 작성 단계에서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③ (생략)</p> <p>제11조(현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제2조(정의) ----- ----- 뜻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서비스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이란 ----- ----- ----- ----- -----.</li> <li>2. "고객"이란 ----- -----.</li> <li>3. "서비스"란 -----.</li> <li>4. "고객만족도"란 ----- ----- -----.</li> </ol> <p>제5조(현장의 제·개정 절차) ① ----- ----- 제6조제7호에 따른 ----- -----</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현장심의위원회 운영) ① 현장</p>

현 행	개 정 안
<p>① <u>현장의 제·개정 및 시행과 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장 등 관계공무원과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대학교수, 고객의 대표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u></p> <p>③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순천시직무대리규칙이정하는 직제순의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u></p> <p>④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시까지로 한다.</u></p> <p>⑤ <u>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현장 제정 및 개정</u>에 관한 사항</li> <li>2. <u>서비스 개선</u>에 관한 사항</li> <li>3. <u>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u></li> <li>4. <u>현장 실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u></li> <li>5. <u>현장 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선정</u></li> </ol> <p>⑥ <u>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민소</u></p>	<p><u>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u></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현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u></li> <li>2. <u>현장 내용의 심사</u></li> <li>3. <u>현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u></li> <li>4. <u>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u></li> <li>5. <u>그 밖에 현장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u></li> </ol>

현 행	개 정 안
<p>통과장이 된다. &lt;개정 2007.01.09, 2012.08.06&gt;</p> <p>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08.09.29&gt;</p> <p><b>제12조(분과별 심의위원회)</b> ① 부서별 또는 분야별 현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분과별 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분과별 심의위원회는 국·소·단장과 해당 국·소·단장 및 고객을 위원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객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lt;개정 2007.01.09, 2009.06.30&gt;</p> <p>③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 회의수당 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고, 간사는 국·소·단장이 지정한 다. &lt;개정 2009.06.30&gt;</p> <p><b>제14조(보상조치)</b> ① (생략)</p> <p>② 제1항에 의거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lt;삭 제&gt;</p> <p><b>제14조(보상조치)</b>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따라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개정이유

- 순천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영입토록 통합방위법시행령개정 [2015. 1. 6]
- 현실적 실효성을 갖춘 협의회 위원을 확보하여 운영의 내실화 기여 목적

## 2. 주요내용

- 순천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영입(안 제3조제2항)
  -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9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8. 순천보훈지청장
- 협의회 구성인원을 25인 이내로 조정(안 제3조제1항)
  -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개정

3. 개정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수렴(2015. 2. 2. ~ 2. 23.)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5. 1. 28.(전략기획과-947호)

##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제8호부터 제11호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순천보훈지청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협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u>10인 이상 20인 이내</u>로 구성하되 의장은 순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생략)</p> <p>1. ~ 7. (생략)</p> <p><u>&lt;신설&gt;</u></p> <p><u>8. ~ 11. (생략)</u></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3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p> <p>-----</p> <p>----- <u>25인 이내</u> -----</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순천보훈지청장</u></p> <p><u>9. ~ 12. (현행 제8호 ~ 제11호와 같음)</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개정이유

-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집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매입 및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방치될 경우 유해성 폐기물이나 재활용할 경우 90%이상 자원회수가 가능한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수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 부담률 현실화를 위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제11조)
  - 제4항 신설 :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수집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매입하거나 참여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제21조)
  - 제1항 제2호 개정 : 다만, 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방법 등으로 배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별표4)
  - 별지와 같이 한다.
  -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안 : 순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필(14. 11. 21)

##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5. **관련부서 의견**

- 자원재활용 촉진과 민간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폐가전의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하여 각 가정에 무상 방문 수거한 폐가전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와 주민 부담률을 감안하여 50%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재활용관련조례〉

- 입법예고(2015. 1. 1 ~ 2015. 1.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종량제봉투가격관련조례〉

- 입법예고(2014. 12. 10 ~ 2014. 12. 3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 사항**

〈재활용관련조례〉

- 법제부서 공고필 : 2014. 12. 30(순천시 공고 제2014-1445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12. 30(여성가족과-47396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2. 31(전략기획과-14959호)

〈종량제봉투가격관련조례〉

- 법제부서 공고필 : 2014. 12. 10(순천시 공고 제2014-136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12. 15(여성가족과-45559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2. 31(전략기획과-14959호)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수집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매입하거나 참여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방법 등으로 배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제21조 및 제25조 관련)

(단위 : 원)

규격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150	250	500	1,300	2,500

## &lt;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gt;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text{목표치}\%)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 (주) 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
2. ℓ 당 처리비용  
연간총처리비용÷봉투용량(판매된 봉투+무료 지급된 봉투+공공용봉투)
3. 주민부담율  
(봉투판매금액+공공용,무상지급봉투 판매환산금액) ÷ (주민배출 쓰레기 처리비용) × 100
4. 봉투 제작비 :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 단가
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u>&lt; 신 설 &gt;</u></p>	<p>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의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한하여 분리 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장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종량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생략)</p> <p>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u>다만, 제품판매과정에서 인수한 폐냉장고, 폐김치냉장고는 판매과정에서 판매점이 회수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무료로 수거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다만, 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방법 등으로 배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p> <p style="text-align: center;"><b>쓰레기 규격봉투 가격</b> (제21조 및 제25조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규격</td> <td style="width: 10%;">5ℓ</td> <td style="width: 10%;">10ℓ</td> <td style="width: 10%;">20ℓ</td> <td style="width: 10%;">50ℓ</td> <td style="width: 10%;">100ℓ</td> </tr> <tr> <td>가격</td> <td><u>90</u></td> <td><u>180</u></td> <td><u>350</u></td> <td><u>850</u></td> <td><u>1,700</u></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text{목표치}\%)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math> </div> <p>(주) 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p> <p>2. ℓ 당 처리비용 연간총처리비용÷봉투용량(판매된 봉투+무료 지급된 봉투+공공용봉투)</p> <p>3. 주민부담율 (봉투판매금액+공공용,무상지급봉투 판매환산금액) ÷ (주민배출 쓰레기 처리비용) × 100</p> <p>4. 봉투 제작비 :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단가</p> <p>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p>	규격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u>90</u>	<u>180</u>	<u>350</u>	<u>850</u>	<u>1,700</u>	<p>[별표 4]</p> <p style="text-align: center;"><b>쓰레기 규격봉투 가격</b> (제21조 및 제25조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규격</td> <td style="width: 10%;">5ℓ</td> <td style="width: 10%;">10ℓ</td> <td style="width: 10%;">20ℓ</td> <td style="width: 10%;">50ℓ</td> <td style="width: 10%;">100ℓ</td> </tr> <tr> <td>가격</td> <td><u>150</u></td> <td><u>250</u></td> <td><u>500</u></td> <td><u>1,300</u></td> <td><u>2,500</u></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text{목표치}\%)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math> </div> <p>(주) 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p> <p>2. ℓ 당 처리비용 연간총처리비용÷봉투용량(판매된 봉투+무료 지급된 봉투+공공용봉투)</p> <p>3. 주민부담율 (봉투판매금액+공공용,무상지급봉투 판매환산금액) ÷ (주민배출 쓰레기 처리비용) × 100</p> <p>4. 봉투 제작비 :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단가</p> <p>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p>	규격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u>150</u>	<u>250</u>	<u>500</u>	<u>1,300</u>	<u>2,500</u>
규격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u>90</u>	<u>180</u>	<u>350</u>	<u>850</u>	<u>1,700</u>																				
규격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u>150</u>	<u>250</u>	<u>500</u>	<u>1,300</u>	<u>2,500</u>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의 정보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 현행조례의 잘못된 형식과 자구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제2조제3호의 “집행기관”에 “순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순천시가 출연하는 기관”을 포함시킴
- “각호”를 “각 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 등 자구 수정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소요예산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4. 10. 15. ~ 11. 4.)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0. 6.(전략기획과 - 1090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4. 10. 15.(순천시 공고 제2014 - 1139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필 : 2014. 9. 1.(여성가족과 - 33862호)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집행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순천시(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다. 순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순천시가 출연하는 기관

**제5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정보목록 중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호서식에 의한”을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서식에 의한”을 “제4호서식에 따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에 규정된”을 “제1항에 따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호서식에 의하여”를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기간내”를 각각 “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6호서식에 의한다.”를 “제6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7호서식에 의한다.”를 제7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를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을 각각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써”로, “정보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보는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호서식에 의한”을 “제8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9호서식에 의한다.”를 “제9호서식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0호서식에 의하여”를 “제10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호서식에 의한”을 “제1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0조 규정을”을 “제20조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2호서식에 의하여”를 “제1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 -----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u> ----- ----- ----- -----</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생 략)</p> <p>2.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이 <u>조례에 의하여</u>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u>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u>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p> <p>3. "집행기관"이라 함은 <u>순천시(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u></p>	<p><b>제2조(정의)</b> ----- ----- <u>각 호</u> -----.</p> <p>1.(현행과 같음)</p> <p>2. ----- <u>조례에 따라</u> ----- ----- ----- <u>제2조제10호에 따른</u> ----- -----</p> <p>3 "집행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순천시(보조기관 · 소속행정기관 ·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제1항에 따라 <u>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u> 다. <u>순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순천시가 출연하는 기관</u></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략)</p> <p>② 집행기관은 제1항 <u>각호</u>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u>정보목록중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각 호</u></p> <p>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u>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u></p> <p>② <u>제1항에 따라</u></p>

현 행	개 정 안
<p>③ (생 략)</p> <p>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 또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 ----- -----제2호서식에 따른----- -----.</p> <p>③ ----- -----제4호서식에 따른----- -----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 -----.</p> <p>1. ~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제7조에 따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항에 따른	제3호 서식에 따라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1.			기간 내
2. 정보를 생산한 집행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기간 내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기간 내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기간 내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⑥ 비공개 요청 및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	-----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제8조에 따른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호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	-----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
제10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집행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	-----	-----제8조에 따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③ 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	-----	-----제1항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④ 집행기관은 <u>제8조의</u>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 <u>제8조에 따라</u> ----- ----- ----- ----- -----.
⑤ 청구인이 <u>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 <u>제1항에 따라</u> ----- ----- ----- ----- -----.
⑥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u>제7호서식에</u> 의한다.	⑥ ----- ----- <u>제7호서식에 따른다.</u> -----
<b>제11조(정보공개방법)</b>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 4. (생략)	<b>제11조(정보공개방법)</b> ① ----- ----- <u>각 호</u> -----.
②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u>요청에</u> 의하여 <u>제1항 각호의</u>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 ----- ----- <u>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u> ----- ----- -----.
③ <u>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u>제1항에 따라</u> ----- ----- ----- ----- -----.



현 행	개 정 안
<p>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p>	<p>3. ----- -----제8호서식에 따른----- -----</p>
<p>③ 집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 ----- -----제2항에도----- -----.</p>
<p>제13조(비용부담) ① (생략)</p>	<p>제13조(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p>	<p>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50퍼센트 -----.</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기타 집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p>	<p>3. <u>그 밖에</u> ----- -----</p>
<p>③ ~ ④ (생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순천시에는 수입증지로, 그 이외의 기관은 현금으로 각각 납부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 -----.</p>
<p>⑥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⑥ ----- 제1항에 따른 ----- ----- -----.</p>



현행	개정안
<p>⑥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있는 때에는 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 ----- ----- 제20조를 준용한다.</p>
<p>제15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5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8조 제3항에 따라 ----- ----- -----.</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 ----- -----.</p>
<p>③ 집행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p>	<p>③ ----- 제2항에 따른 ----- -----.</p>
<p>제16조(자료제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전년도에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자료제출) ----- ----- ----- 제12호서식에 따라 -----.</p>

#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 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0.05.27)되어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장애인수첩) 및 나이 제한(만20세 이상)을 폐지하고 타인에게 불법양도 및 위탁운영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을 강화하며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등 직접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가족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설치허가 신청대상 나이 제한 및 구비서류 폐지
  - 제4조(신청) 만20세 이상 → 폐지
  - 제4조(신청) 장애인수첩 사본 → 폐지
- 타인에게 불법 전대,양도 및 위탁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 조항(제7조 사업의 의무) 신설
  - 허가를 받는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해야하며 양도 및 위탁할 수 없음
  -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1~2급 장애인은 대리인 대행가능
    - 대리인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
    -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조례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 조례에 따른다

### 3. 개정규칙안 : 별 첨

### 4.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등)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2호) : 비예산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5. 1 . 6 ~ 2015 .1 . 2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01. 12(여성가족과- 133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비예산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2. 24(전략기획과-1469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01. 06(순천시 공고 제2015-24호)

##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순천시”로,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자동판매기”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판매대 등”을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본청”을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본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시설물에 신문판매대 등”을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으로, “때에는 타”를 “때에는 다른”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에 따라”로,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을 “설치를 허가할”로, “방법에 의하여 사전”을 “방법으로 사전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20세이상 세대주로 하며”를 “신문판매대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장애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단체등”을 “단체 등”으로, “신문판매대 등을”을 “신문판매대등을”로, “그외”를 “그 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를 “(사업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를 “(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공시설의 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2. 공공복지를 위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청문) 순천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용료) 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전공고) 순천시장, 사업소 및 읍면동장(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공고) ----- ----- ----- -----제2조제1항에 따라----- ----- 설치를 허가할----- ----- 방법으로 사전에----- -----.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20세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장애인 수첩 사본 1부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우선허가)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 ----- 제4조에 따른----- -----.		
제6조(설치의 제한) 장애인, 장애인 단체 등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설치의 제한) ----- 단체 등----- ----- 신문판매대등을----- ----- 그 외----- -----.		
제7조(허가의 취소) 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2. 공공복지를 위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제7조(사업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 당하였을때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p>	<p>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7조의2(청문)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8조(사용료)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p>	<p>제8조(허가의 취소) ① 공공시설의 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li> <li>2. 공공복지를 위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li> <li>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 당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청문) 순천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사용료) 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9조·제10조 (생 략)	제10조·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 풍덕·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제안이유

- 청원건널목 관리의 전문성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과 단순사무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코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위탁시설 개요

구분	인제건널목	풍덕건널목	비고
위치	인제동 19-2	풍덕동 94-2	
규모	L=24m, B=12m	L=24m, B=12m	
주요시설	관리동 1동, 차단기 2대, 신호등 2대	관리동 1동, 차단기 4대, 신호등 2대	

#### 나. 현 실태

- 근무형태 : 1인3조 24교대
- 운영실태
  - 업무중요도 ☞ 일평균 5회 운행 25~30분 근무(돌발운행 이석 불가)
  - 안전,책임성 측면 ☞ 2교대 근무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미흡
  - 경제적인 측면 ☞ 연간 80,000천원 절감(단순 견적 비교)

구분	직영운영	위탁업체	절감액
금액	325,748천원	246,192천원	
산출기초	- 인건비 : 52,890천원*3명*2개소 - 공공요금 : 320천원*2개소*12개월 - 사무관리비 : 728천원	- 인건비 : 6인*3,296천원*12개월 - 공공요금 : 320천원*2개소*12개월 - 사무관리비 : 100천원*12개월	△80,000천원
참고자료	- 7급 2명 (7급 17호봉 기준) - 2013년도 총무과 정원 산정 자료 참조(52,890천원)		

- 실정법 준수 여부 ☞ 건널목 관리지침,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위반  
- 주 40시간 → 72시간(32시간 초과)

타 기관 청원건널목 전문업체 위탁관리 전환

(안전행정부 2013년말 기준)

건널목수	위탁건수	위탁율	비고
191개소	156개소 (코레일 82, 사설74)	82%	

**다. 위탁기간 : 계약일로 부터 3년**

**라. 위탁사무**

- 열차 운행시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 및 보행자 통제
-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을 때의 열차 방호
- 건널목 시설(차단기,신호등 제외), 비품 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마.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에 의한 최저가 업체**

**바. 민간위탁 운영계획**

- 운영일수 : 주 7일(월~일)
- 운영인원 : 6명
- 운영형태 : 3조 2교대 주야간 24시간 교대 근무

**사. 예산 지원액 : 246,19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수 량	산출자료	비 용	비 고
계			246,192	
인건비	6인	6인×3,296천원×12개월	237,312	단순견적가
공공요금	-	320천원×2개소×12개월	7,680	공공요금 평균
사무관리비	-	100천원×12개월	1,200	사무용품 및 시설장비 유지비

※ 대수선비 제외

3. 주무부서 의견

- 1일 평균 10회 기차 운행시 거수 통제 단순 사무로서 고액의 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것은 인력운영의 효율적 저해요인 및 예산낭비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 연간 절감 예상액 : 80,000천원
- 철도 건널목 사고 발생시 반드시 인사사고가 수반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널목 관리의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관련법령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붙 임

-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 풍덕·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

## I 시설개요

구 분	인제건널목	풍덕건널목	비고
위 치	인제동 19-2	풍덕동 94-2	
규 모	L=24m, B=12m	L=24m, B=12m	
주요시설	관리동 1동, 차단기 2대, 신호등 2대	관리동 1동, 차단기 4대, 신호등 2대	

## II 민간위탁계획

### 민간위탁 목적

- 청원건널목 관리의 전문성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과 단순사무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코자 함.

###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 순천시 풍덕,인제 청원건널목
- 위탁기간 : 계약일로 부터 3년간
- 위탁범위
  - 열차 운행시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 및 보행자 통제
  -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을 때의 열차 방호
  - 건널목 시설(차단기,신호등 제외), 비품 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수탁자 선정** : 공개경쟁에 의한 최저가 업체

**민간위탁 운영계획**

- 운영일수 : 주 7일(월~일)
- 운영인원 : 6명
- 운영형태 : 3조 2교대 주야간 24시간 교대 근무
- 위 탁 비 : 246,19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수 량	산출자료	비 용	비 고
계			246,192	
인건비	6인	6인×3,296천원×12개월	237,312	단순견적가
공공요금	-	320천원×2개소×12개월	7,680	공공요금 평균
사무관리비	-	100천원×12개월	1,200	사무용품 및 시설장비 유지비

※ 대수선비 제외

**Ⅲ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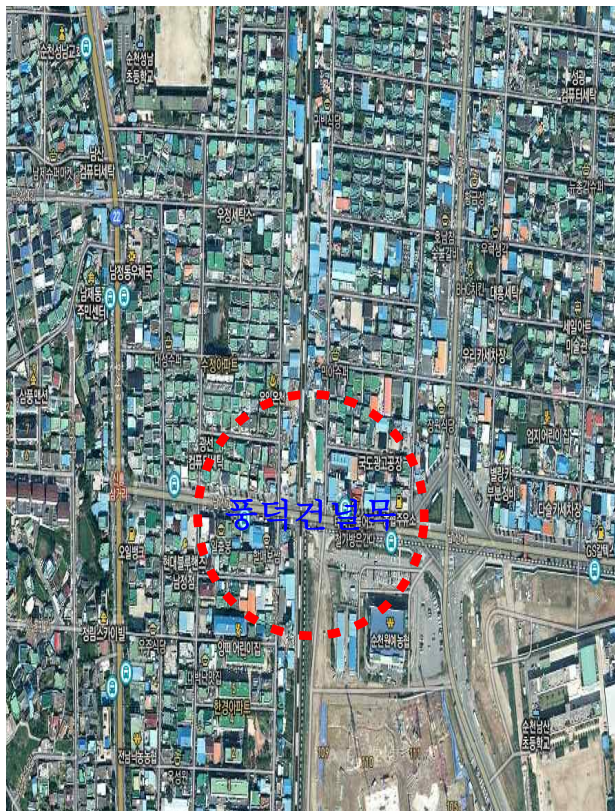
- 순천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15. 2.
- 위탁관리용역비 예산편성 : 2015. 5.
- 위탁관리업체 선정 : 2015. 6.
- 위탁관리 개시 : 2016. 7.

# <위치도 및 사진대지>

## 인 제 건 널 목



## 풍 덕 건 널 목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부응하고,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업체가 시공토록 하여 오점합 방지 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하수도법과 중복되는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를 삭제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관련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제2항에 하수처리구역 지정시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관련 :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제5항에서 배수설비 설치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6조(일시사용 신고) 관련 : 하수도법 제27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 삭제
- 하수도법에 중수도 설치 관리규정 삭제에 따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9조 ~ 제12조 삭제
  - ⇒중수도 관련 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2014.07.17. 제정시행)
- 하수도 배수설비 오점합 방지를 위해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에 배수설비 오점으로 인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전문 대행업체가 시공토록 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함.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6조(일시사용 신고) 규정이 금번 삭제됨에 따라 제17조제3항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 선납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15조, 제26조, 제27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5. 1. 6 ~ 1. 2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11. 26 (여성가족과-43476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2. 31 (전략기획과-1496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01. 06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공고 제2015-1호)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li> <li>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li> <li>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li> <li>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li> </ol>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li> <li>2.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li> <li>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li> </ol> <p>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수도 사용계획서</li> <li>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li> <li>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li> </ol>	<p>&lt;삭 제&gt;</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4. <u>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u></p> <p>② <u>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u></p> <p>③ <u>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1. <u>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u></p> <p>2. <u>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u></p> <p>3. <u>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u></p> <p>④ <u>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u></p> <p>⑤ <u>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 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u></p> <p><u>제10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1. <u>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u></p>	<p><u>&lt;삭 제&gt;</u></p>

현 행	개 정 안
<p>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도 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p> <p>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p> <p>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p> <p>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p>	
<p>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u>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p>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 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 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 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 상으로 한다.</p> <p>③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 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p> <p>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u>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u></p> <p>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⑤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u></p>
<p>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p> <p>① ~ ② (생략)</p> <p><u>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추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④ (현행과 같음)</p>

#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개정이유

-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경제활동 불편 해소 및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조례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함
-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대상 규제로 등록되어 삭제
-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같은 조항 제15조제1항제1호에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와 중복되어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
- 제17조제4호를 삭제한다.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조례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규정과 중복되어 제17조제4호를 삭제
- 별표1 중 부과금액 1차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규정이 개정대상 규제로 등록되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시정으로 완화하고, 2차 위반시 부터 과태료 부과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5. 1. 6 ~ 1. 2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11. 26 (여성가족과-43476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2. 31 (전략기획과-1496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01. 06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공고 제2015-2호)

##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1 중 부과금액 1차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b>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b></p> <p>5. (생략)</p>	<p>제5조(설치기준)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b>&lt;삭제&gt;</b></p> <p>5. (현행과 같음)</p>
<p>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p> <p><b>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b></p> <p>2. · 3.(생략)</p>	<p>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 ----- -----.</p> <p><b>&lt;삭제&gt;</b></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b>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b></p> <p>3. · 4.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b>&lt;삭제&gt;</b></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 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u>여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	제17조(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 ----- ----- 1. ~ 3.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1]</b>  <u>과태료부과 기준</u> (제18조관련)</p> <p><b>1. 일반기준</b>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p> <p><b>2. 개별기준</b>                      (단위:만원)</p>										<p><b>[별표 1]</b>  <u>과태료부과 기준</u> (제18조관련)</p> <p><b>1. 일반기준</b>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p> <p><b>2. 개별기준</b>                      (단위:만원)</p>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위반사항		근거조항																	
1.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법 제11조 제1항)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100	150	200	100	150	200	100	150	200				
2.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명령 불응		법 제21조 제2항제1호																	
가.공중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법 제6조)				20	40	60	시정	40	60	시정	40	60	시정	40	60				
나.이동화장실 설치 명령불응 (법 제10조)				10	20	30	시정	20	30	시정	20	30	시정	20	30				
3.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 위반		법 제21조 제2항제2호																	
가.표지부착의무위반 (법 제11조 제2항)				10	20	30	시정	20	30	시정	20	30	시정	20	30				
나.설치·관리기준 위반 (법 제11조 제4항)				20	30	40	시정	30	40	시정	30	40	시정	30	40				
4.개선명령 불이행		법 제21조 제2항제3호																	
가.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설치기준위반 (법 13조)				20	40	60	시정	40	60	시정	40	60	시정	40	60				
나.법 제8조의 관리기준 (법 13조)				10	20	30	시정	20	30	시정	20	30	시정	20	30				
5.보고 등의 요구 불응 (법 제19조)		법 제21조 제2항제4호		10	20	30	시정	20	30	시정	20	30	시정	20	30				
6.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법 제14조)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시정	10	20	시정	10	20	시정	10	20				

#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개정이유

-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경제활동 불편 해소 및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7조(수집·운반업자의 자격요건)에서 “대행업을 신청·계약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를 받도록”하는 규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삭제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5. 1. 6 ~ 1. 2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11. 26 (여성가족과-43476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2. 31 (전략기획과-1496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01. 06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공고 제2015-3호)

##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집·운반업자의 자격요건) 가  <u>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 및  계약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  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u>&lt;삭 제&gt;</u></p>

#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개정이유

-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시장 자문 위원회로 위원을 매 3년마다 위촉 관리하고 있으나 운영 횟수가 년 1회 이하임.
- 또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참여 하고자 할 때 중복 제한으로 참여 기회 감소(3개 까지만 참여 가능)

## 2. 주요내용

-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필요시 구성하는 한시 위원회로 전환

## 3. 개정조례안 : 별 첨

## 4.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예산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5. 2. 2 ~ 2. 2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 19 (여성가족과-2159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5. 1. 20 (기획전략과-60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1. 27 (순천시 공고 제2015-127호)

##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u>&lt;신 설&gt;</u></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촉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p>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u></p> <p><u>&lt;삭제&gt;</u></p>

#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개정이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수련시설 아님).
- 센터 운영에 따른 보험가입 조문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영조물배상 공제로 갈음되므로 불필요한 조문임.

## 2. 주요내용

- “제22조(보험가입)”를 삭제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예산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5. 2. 2 ~ 2. 2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 19 (여성가족과-2159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5. 1. 20 (기획전략과-60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1. 27 (순천시 공고 제2015-129호)

##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5. 2. 27

## 1. 개정이유

- 순천시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학습설치 등 안건이 발생하면 필요시 구성하는 한시적 기구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 순천시민대학 기능별 명칭 중 강좌명과 성격에 맞지 않는 일부대학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7조제1항 중 “평생교육협의회” 를 “안건이 발생시 구성·운영하는 한시교육협의회”로 변경
- 제8조 삭제
- 제10조제1항 “위원장은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로 개정
- 제14조제2항 중 기능별 대학명칭 일부 변경

## 3. 개정조례안 : 별 첨

## 4.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3조, 평생교육법 제14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예산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5. 2. 2 ~ 2. 2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 27 (여성가족과-3140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5. 1. 28 (기획전략과-95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1. 30 (순천시 공고 제2015-144호)

##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6조에 따른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은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협의회”를 “위원장은”으로 하고, “소집하고”를 “소집하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민참여대학, 문화예술대학, 인문교양대학, 직업능력대학, 여성문화대학 등으로”를 “인문교양대학, 사회경영대학, 생활기능대학, 문화예술대학, 여성문화대학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7조(구성) ① ----- -----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 원으로 제6조에 따른 심의 안전 발생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lt;삭제&gt;</p>
<p>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p> <p>② ~ ③ (생략)</p>	<p>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 소집하며,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순천시민대학 개설·운영) ① (생략) ② 순천시민대학은 학습 기능별로 시 민참여대학, 문화예술대학, 인문교양대 학, 직업능력대학, 여성문화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p> <p>③ (생략)</p>	<p>제14조(순천시민대학 개설·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문 교양대학, 사회경영대학, 생활기능대학, 문화예술대학, 여성문화대학으로----- -----.</p> <p>③ (현행과 같음)</p>